

소규모합병 공고

신라젠 주식회사(이하 “신라젠”)는 주식회사 우성제약(이하 “우성제약”)와 2025년 4월 29일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신라젠이 우성제약을 흡수합병하여 신라젠은 존속하고 우성제약은 소멸
2. 합병비율 : 신라젠: 우성제약 = 1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 - 가. 상호 : 주식회사 우성제약
 - 나. 본점소재지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-10, 비동 205, 206, 207호(고색동, 수원벤처밸리2)
4. 합병기일 : 2025년 7월 1일
5. 신라젠과 우성제약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가. 행사절차 : 2025년 5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함
 - 나. 제출기간 : 2025년 5월 13일 ~ 2025년 5월 27일
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- 1) 명부주주: 2025년 5월 27일까지 본사 [IR부서]에 제출
※ 본사 주소 :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6, 3층(수표동, 크리스탈스퀘어)
※ 연락처 : 02-368-2600
 - 2) 실질주주: 2025년 5월 22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(제출절차는 각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,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 요망)
 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 -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. 다만, 이 경우 신라젠 주식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.

2025년 5월 13일

신라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경